

/ 2023 · 02 /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REALMETER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1. 조사의 목적	3
2. 조사 설계	3
※ 알려두기	3
3. 조사 내용	4
4. 응답자 특성	5
제2장. 조사결과 요약	7
1. 발신자 종량제	9
2. 망중립성 의미	9
3.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10
4.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11
5.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11
6.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12
7.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13
8.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13
9.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14
10. 공공인터넷 허용	14
11. 망 사용료법 찬반	15
제3장. 조사결과	17
1. 발신자 종량제	19
2. 망중립성 의미	21
3.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23
4.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25
5.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27
6.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29
7.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31
8.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33
9.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35
10. 공공인터넷 허용	37
11. 망 사용료법 찬반	39
부록. 설문지	41



표 차례



표 III-1	발신자 종량제	20
표 III-2	망중립성 의미	22
표 III-3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24
표 III-4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26
표 III-5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28
표 III-6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30
표 III-7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32
표 III-8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34
표 III-9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36
표 III-10	공공인터넷 허용	38
표 III-11	망 사용료법 찬반	40

■■■■■■■ **그 림 차 례** ■■■■■■

그림 II-1	발신자 종량제	9
그림 II-2	망중립성 의미	9
그림 II-3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10
그림 II-4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11
그림 II-5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11
그림 II-6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12
그림 II-7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13
그림 II-8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13
그림 II-9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 향상	14
그림 II-10	공공인터넷 허용	14
그림 II-11	망 사용료법 찬반	15
그림 III-1	발신자 종량제	19
그림 III-2	망중립성 의미	21
그림 III-3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23
그림 III-4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25
그림 III-5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27
그림 III-6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29
그림 III-7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31
그림 III-8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33
그림 III-9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35
그림 III-10	공공인터넷 허용	37
그림 III-11	망 사용료법 찬반	39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1. 조사개요
 2. 결과요약
 3. 조사결과
- 부록. 설문지

1. 조사의 목적

- 현재 논의 중인 망 사용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 보다 나은 인터넷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이 조사를 수행함.

2. 조사 설계

- 조사주관 :  opennet
- 조사기관 : (주)리얼미터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
표본오차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
응답률	17.8%(재발송 제외 총 5,633건 발송)
조사 기간	2023년 2월 17일 ~ 2월 22일 (6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100%
표집틀	전국 일반인 대상 온라인 패널

※ 일러두기

-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의 해석 시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함.
- 대상 표본 수가 적을수록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세부 결과분석에서 50명 이하의 응답자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않음.)
- 문항별 결과는 변수별로 백분율(%)을 산출하며, 결괏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음. 이 과정에서 백분율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음.
 ※ 반올림 오차란 실제 전체 합계는 100%이나 소수점 반올림 수치를 기록하는 관계로 합계가 100.0%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오류가 아님. 가령 '54.35'와 '45.65'의 합은 정확히 '100'이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결과를 기록한 경우 '54.4'와 '45.7'로 표기되어 두 수치의 단수 합계가 '100.1'로 보이는 경우가 있음.

3. 조사 내용

I. 응답자 선별 문항

- 거주지역
- 연령대
- 성별

II. 망 사용료 관련 문항

- 발신자 종량제
- 망중립성 의미
-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 공공인터넷 허용
- 망 사용료법 찬반

4. 응답자 특성

-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준해 성별, 연령대별, 거주권역별로 조사대상자 할당 후 온라인 조사 실시
- 인터넷 주 사용연령층을 고려해 만19세부터 59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함.

구 분		응답자수	비율	95%신뢰수준 오차범위
■ 전 체 ■		1000	100.0	±3.1
연령대	19~29세	228	22.8	±6.5
	30대	218	21.8	±6.6
	40대	269	26.9	±6.0
	50대	285	28.5	±5.8
성별	남성	514	51.4	±4.3
	여성	486	48.6	±4.4
거주권역	서울	193	19.3	±7.1
	경기/인천	336	33.6	±5.3
	대전/세종/충청	106	10.6	±9.5
	강원	27	2.7	±18.9
	부산/울산/경남	144	14.4	±8.2
	대구/경북	90	9.0	±10.3
	광주/전라	92	9.2	±10.2
	제주	12	1.2	±28.3

※ 거주권역별로 강원과 제주 응답자의 수는 각 27명, 12명에 불과해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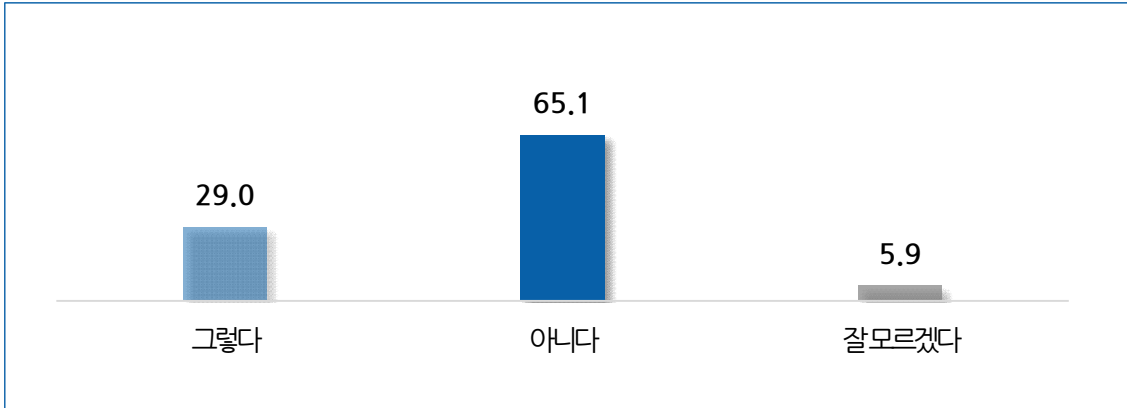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1. 조사개요
 2. 결과요약
 3. 조사결과
- 부록. 설문지

1. 발신자 종량제

그림 II-1 | 발신자 종량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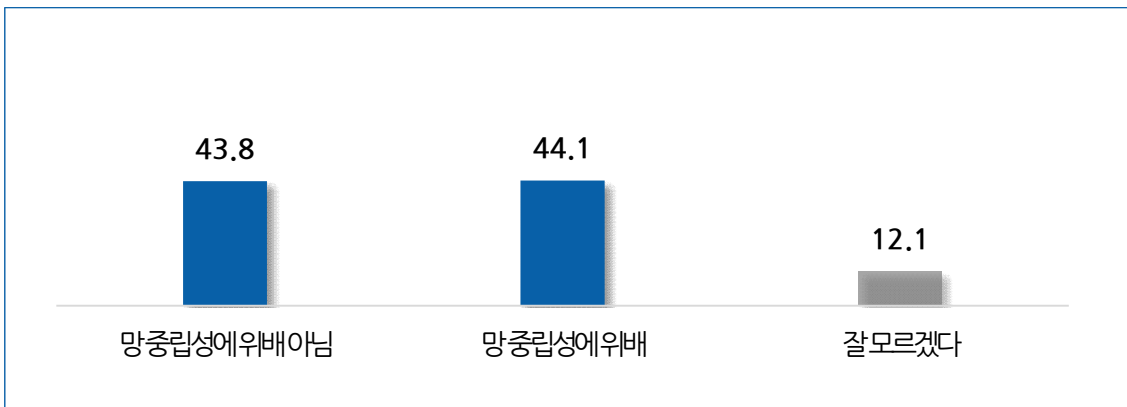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접속비용만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65.1%, ‘많은 데이터를 쓴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29.0%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보낼 데이터양이 많을 경우, 인터넷 접속비용 외에 데이터양에 비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는 발신자 종량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인터넷 접속비용만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아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65.1%로 ‘인터넷도 택배나 수도요금처럼 많은 데이터를 쓴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음.

2. 망중립성 의미

그림 II-2 | 망중립성 의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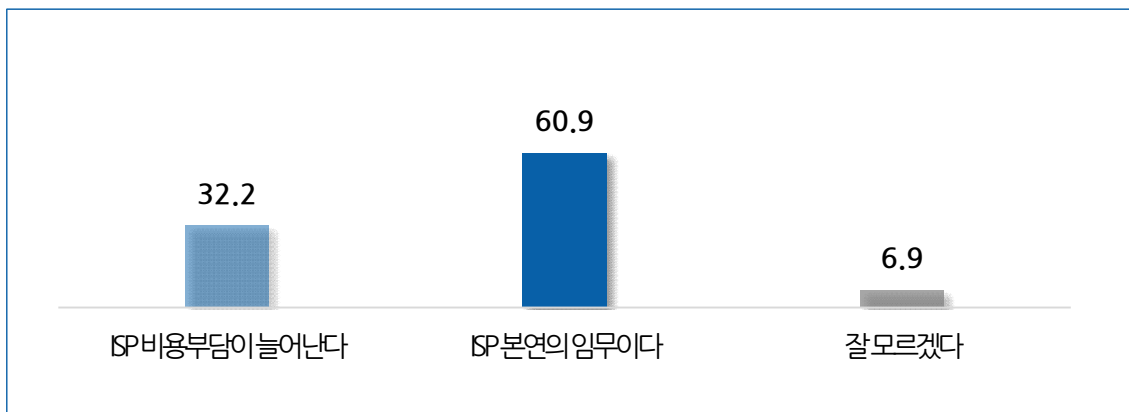
- 데이터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망 중립성의 관계,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 44.1%,
 ‘데이터량에 대해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43.8%

데이터양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망 중립성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보내는 자에게 그 양에 따라 돈을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차별이므로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망중립성에 위배)’라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44.1%, ‘망 중립성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용하는 데이터량에 대해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망 중립성에 위배 아님)’라고 답한 응답자는 43.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3.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그림 II-3 |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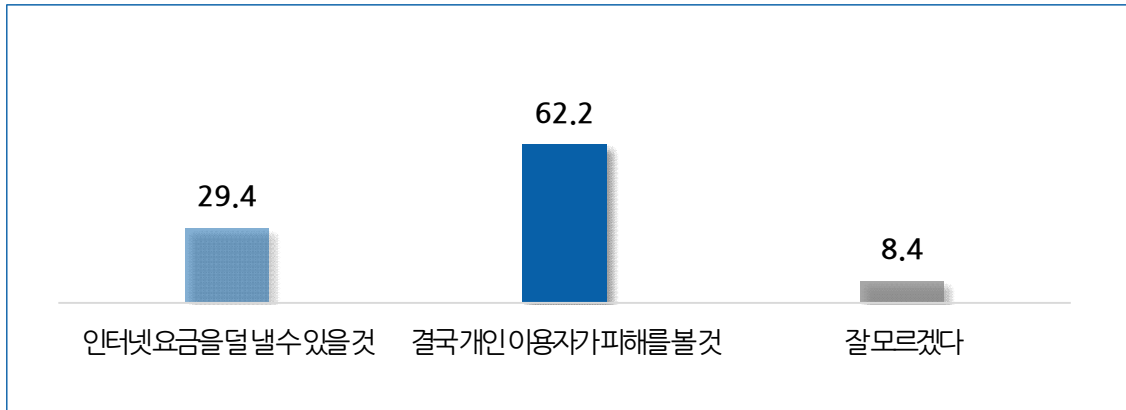
-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콘텐츠 제공자가 있더라도,
 ‘접속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 본연의 임무이다’ 60.9%,
 ‘인터넷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32.2%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콘텐츠 제공자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부담이 추가로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접속속도는 인터넷 사업자와의 계약에 정해져 있고 이용자들도 콘텐츠를 받아보려고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접속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 본연의 임무이다(ISP본연의 임무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60.9%로, ‘트래픽이 많으면 혼잡(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려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연결 설비를 더 구축해야 하므로 인터넷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ISP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답한 응답자 32.2%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음.

4.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그림 II-4 |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단위: %]



■ 망 사용료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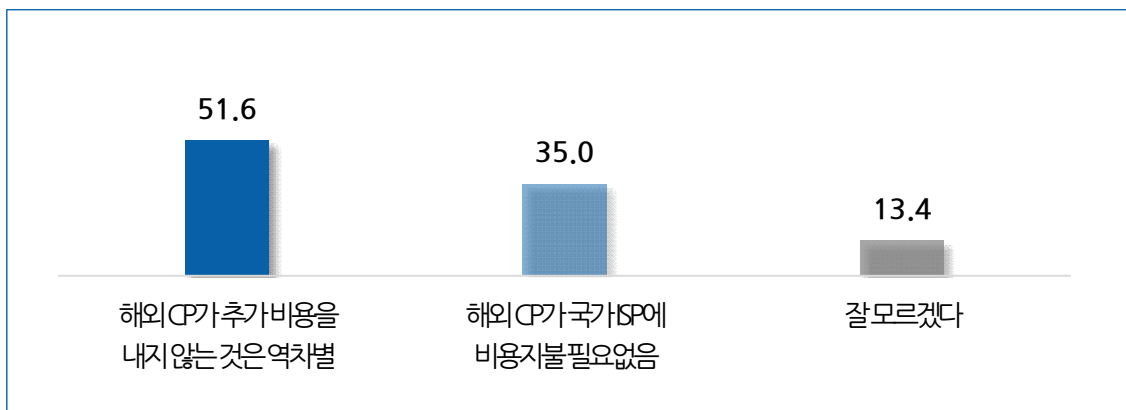
‘결국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 62.2%, ‘인터넷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다’ 29.4%

망 사용료 부과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콘텐츠 사업자는 이용자가 접속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고,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사업자만 인터넷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62.2%였으나,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트래픽 비용을 더 받으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9.4%에 그쳤음.

5.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그림 II-5 |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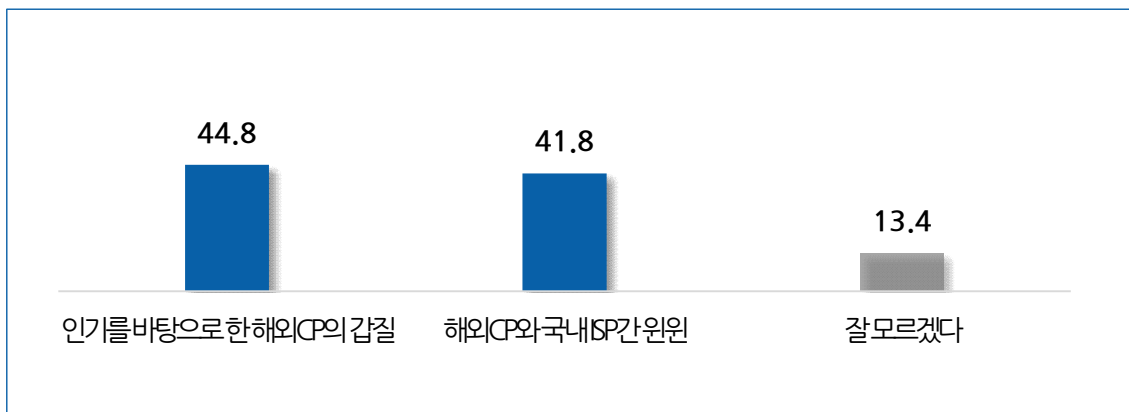
-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 51.6%,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35.0%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 인터넷 접속비용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절반가량인 51.6%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35.0%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6.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그림 II-6 |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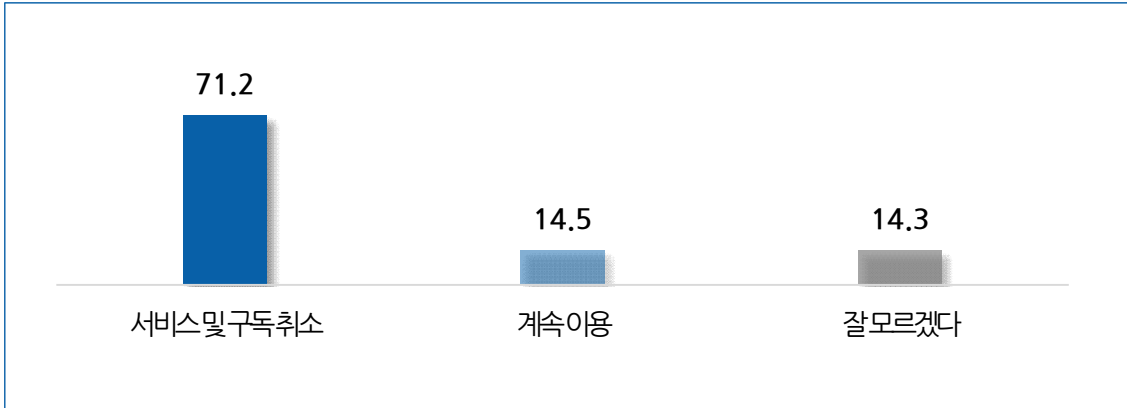
- 해외 콘텐츠 사업의 캐시서버 사용,
 직접접속 대가마저 내지 않는 것은 ‘인기를 바탕으로 한 해외 콘텐츠 제공자의 갑질’ 44.8%,
 ‘해외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윈윈’ 41.8%

해외 콘텐츠 사업자 중 일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과는 별도로 자사의 해저 케이블 및 캐시서버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지름길로 바로 접속하는 것에 대해, ‘해외 콘텐츠 사업자(유튜브, 넷플릭스 등)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직접 접속하는 대가마저도 내지 않는 것은 인기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44.8%,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트래픽을 국내까지 끌어다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1.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7.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그림 II-7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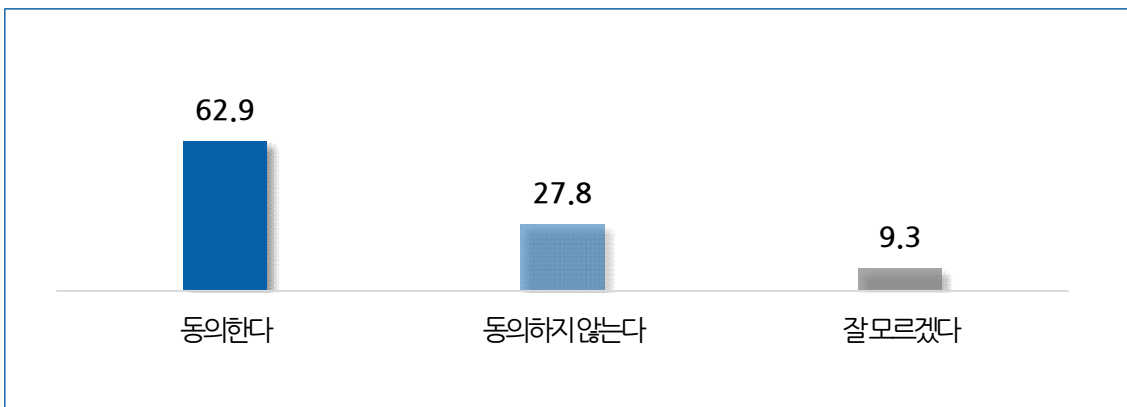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 71.2%, '계속 이용' 14.5%

'망 사용료법'이 통과되어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접속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인다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71.2%로 나타났고, '비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 14.5%에 불과하였음.

8.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그림 II-8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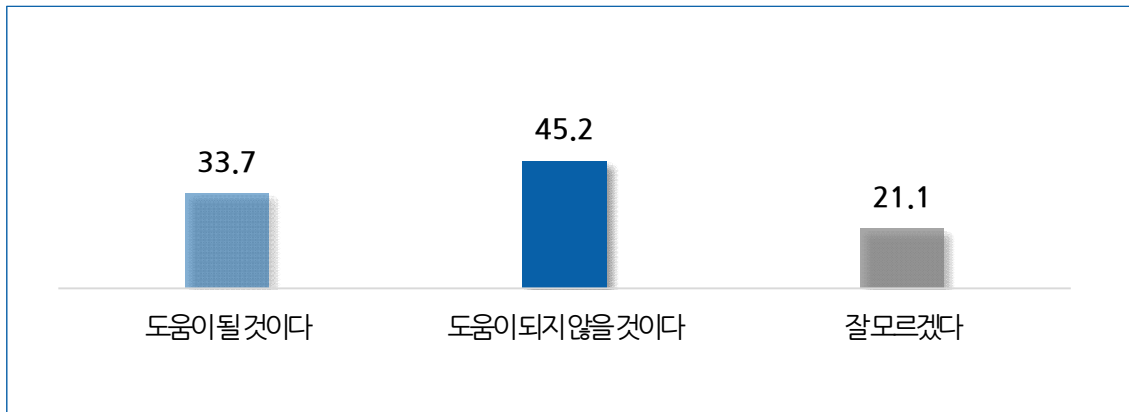
-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 국회 통과 시 '그 비용은 결국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62.9%, '동의하지 않는다' 27.8%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 시 ‘그 비용은 결국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62.9%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27.8%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9.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그림 II-9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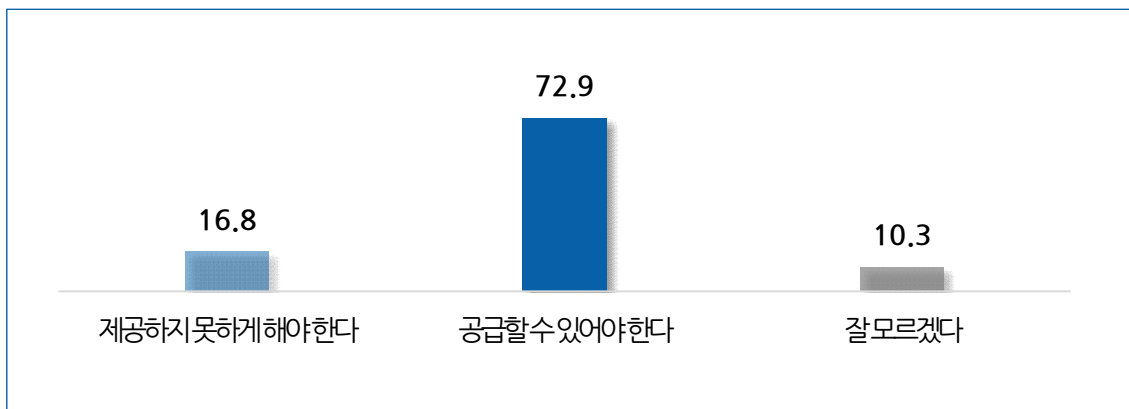
- 망 사용료법 통과되어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및 콘텐츠 품질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5.2%, ‘도움이 될 것이다’ 33.7%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어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및 콘텐츠 품질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5.2%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33.7%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10. 공공인터넷 허용

그림 II-10 | 공공인터넷 허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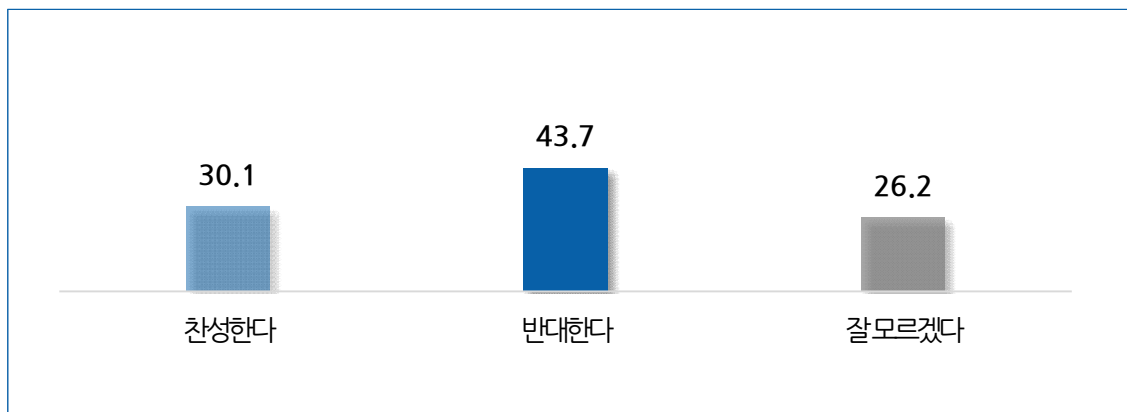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공공인터넷,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72.9%,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16.8%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공공인터넷(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은 전기, 수도처럼 생활필수품이므로 국가와 공공기관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72.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터넷 사업자의 투자 동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대중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6.8%에 불과하였음.

11. 망 사용료법 찬반

그림 II-11 | 망 사용료법 찬반

[단위: %]



- 망 사용료법, ‘반대한다’ 43.7%, ‘찬성한다’ 30.1%

‘망 사용료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3.7%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30.1%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한편,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4명 중 1명 가량인 26.2%로 나타났음.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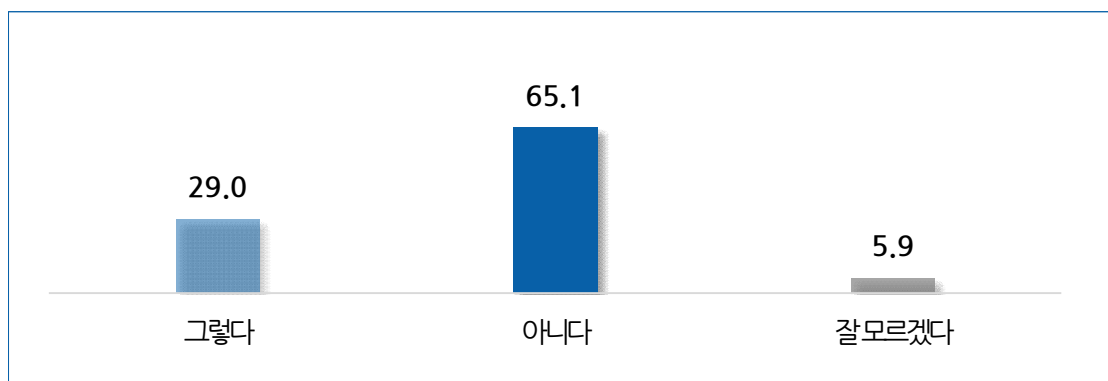
1. 조사개요
 2. 결과요약
 3. 조사결과
- 부록. 설문지

1. 발신자 종량제

Q	우리가 넷플릭스나 카카오(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보려면 KT, SK, U+(인터넷 사업자에 가입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합니다.우리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 비용을 냅니다. 접속 속도가 높으니 인터넷 사업자는 일반 사용자보다 많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네이버 카카오 등은 매년 수백억대). 귀하께서는 콘텐츠 사업자가 보낼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 인터넷 접속비용 외에 데이터량에 비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발신자종량제)?
---	---

그림 Ⅲ-1 | 발신자 종량제

[N: 1,000, 단위: %]



■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접속비용만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65.1%,
‘많은 데이터를 쓴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29.0%

-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보낼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 인터넷 접속비용 외에 데이터량에 비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는 발신자 종량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인터넷 접속 비용만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아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65.1%로 ‘인터넷도 택배나 수도요금처럼 많은 데이터를 쓴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9%임.
- 연령대별, 성별, 거주권역에 따라서도 ‘아니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권역별로 강원과 제주 응답자의 수는 각 27명, 12명에 불과해 분석에서 제외함. 이하 동일

표 III-1 | 발신자 종량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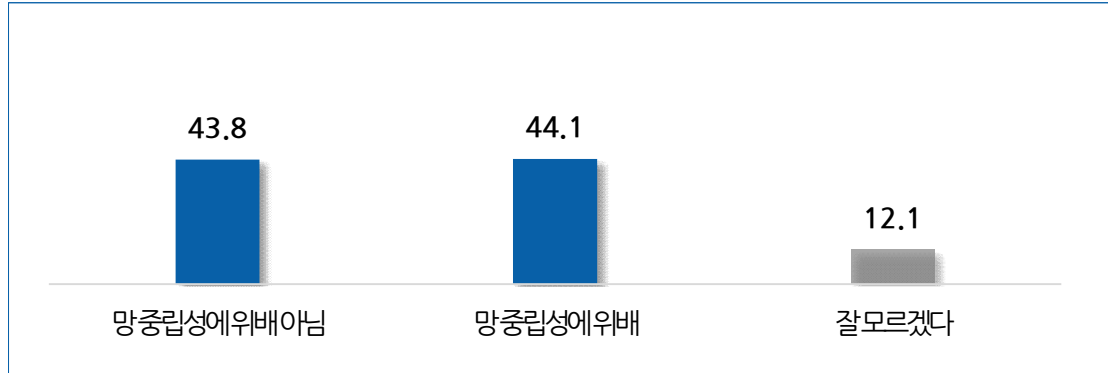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그렇다. 인터넷도 택배나 수도요금처럼 많은 데이터를 쓴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인터넷 접속비용만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29.0	65.1	5.9
연령대	19~29세	(228)	28.9	64.5	6.6
	30대	(218)	23.9	70.6	5.5
	40대	(269)	29.0	64.3	6.7
	50대	(285)	33.0	62.1	4.9
성별	남성	(514)	33.5	61.7	4.9
	여성	(486)	24.3	68.7	7.0
거주권역	서울	(193)	34.7	60.1	5.2
	경기/인천	(336)	24.4	67.6	8.0
	대전/세종/충청	(106)	28.3	67.0	4.7
	강원	(27)	29.6	66.7	3.7
	부산/울산/경남	(144)	32.6	65.3	2.1
	대구/경북	(90)	31.1	63.3	5.6
	광주/전라	(92)	27.2	64.1	8.7
	제주	(12)	25.0	75.0	0.0

2. 망중립성 의미

Q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입니다. 귀하께서는 데이터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망 중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림 Ⅲ-2 | 망중립성 의미

[N: 1,000, 단위: %]



■ 데이터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망 중립성의 관계,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 44.1%,

‘데이터량에 대해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43.8%

- 데이터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망 중립성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를 보내는 자에게 그 양에 따라 돈을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차별이므로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망중립성에 위배)’라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44.1%, ‘망 중립성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용하는 데이터량에 대해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망 중립성에 위배 아님)’라고 답한 응답자는 43.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12.1%에 달했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응답자에서 ‘망 중립성에 위배 아님’ 응답이 50.2%로 ‘망 중립성에 위배’ 응답 비율 37.2%보다 높았으나, 40대 이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성별이나 거주권역에 따라서는 ‘망 중립성에 위배 아님’과 ‘망 중립성에 위배’ 응답 비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었음.

표 III-2 | 망중립성 의미

[단위: %]

구 분		사례 수	망 중립성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용하는 데이터량에 대해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자에게 그 양에 따라 돈을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차별이므로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43.8	44.1	12.1
연령대	19~29세	(228)	36.8	48.7	14.5
	30대	(218)	40.4	48.6	11.0
	40대	(269)	45.7	43.9	10.4
	50대	(285)	50.2	37.2	12.6
성별	남성	(514)	44.9	45.9	9.1
	여성	(486)	42.6	42.2	15.2
거주권역	서울	(193)	47.7	43.5	8.8
	경기/인천	(336)	44.6	41.4	14.0
	대전/세종/충청	(106)	38.7	46.2	15.1
	강원	(27)	33.3	48.1	18.5
	부산/울산/경남	(144)	45.1	45.1	9.7
	대구/경북	(90)	44.4	43.3	12.2
	광주/전라	(92)	40.2	50.0	9.8
	제주	(12)	33.3	50.0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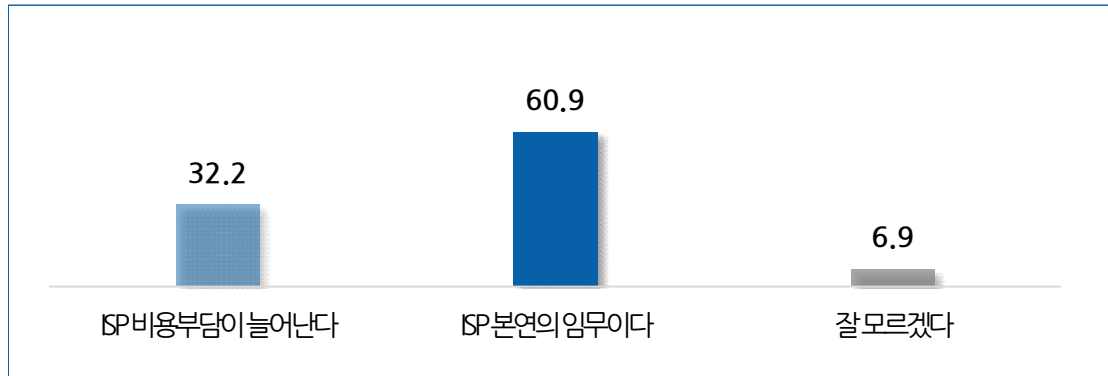
3.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Q

이용자 중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콘텐츠제공자(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부담이 추가로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Ⅲ-3 |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N: 1,000, 단위: %]



-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콘텐츠 제공자가 있더라도, ‘접속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 본연의 임무이다’ 60.9%, ‘인터넷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32.2%
 -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콘텐츠제공자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부담이 추가로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접속속도는 인터넷 사업자와의 계약에 정해져 있고 이용자들도 콘텐츠를 받아보려고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접속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 본연의 임무이다(ISP본연의 임무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60.9%로, ‘트래픽이 많으면 혼잡(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려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연결 설비를 더 구축해야 하므로 인터넷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ISP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답한 응답자 32.2%보다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9%임.
 - 연령대별, 성별, 거주권역에 따라서도 ‘ISP 본연의 임무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ISP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3 | 인터넷 사업자(ISP) 부담 추가

[단위: %]

구분	사례 수	트래픽이 많으면 혼잡(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려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연결 설비를 더 구축해야 하므로 인터넷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각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접속속도는 인터넷 사업자와의 계약에 정해져 있고 이용자들도 콘텐츠를 받아보려고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접속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 본연의 임무이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32.2	60.9	6.9	
연령대	19~29세	(228)	32.9	56.6	10.5
	30대	(218)	29.4	64.2	6.4
	40대	(269)	34.6	58.7	6.7
	50대	(285)	31.6	63.9	4.6
성별	남성	(514)	36.4	58.4	5.3
	여성	(486)	27.8	63.6	8.6
거주권역	서울	(193)	34.2	59.6	6.2
	경기/인천	(336)	31.0	59.2	9.8
	대전/세종/충청	(106)	27.4	66.0	6.6
	강원	(27)	37.0	59.3	3.7
	부산/울산/경남	(144)	38.2	58.3	3.5
	대구/경북	(90)	30.0	65.6	4.4
	광주/전라	(92)	30.4	63.0	6.5
	제주	(12)	25.0	66.7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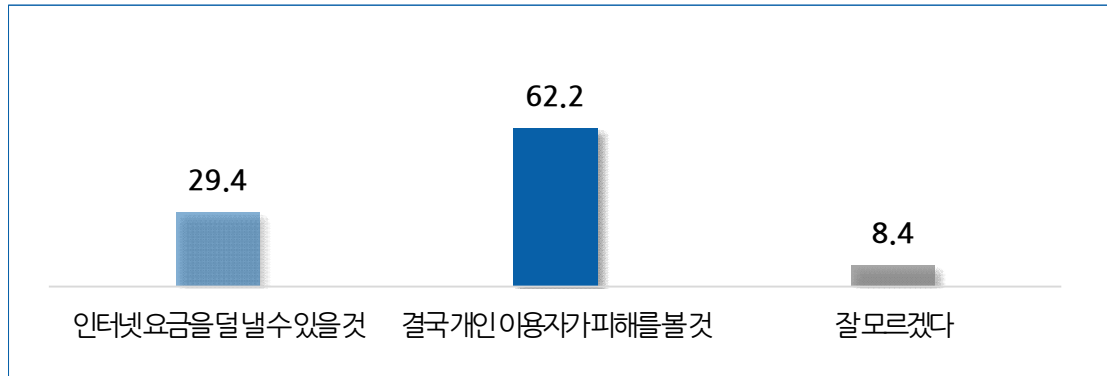
4.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Q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 비용 외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트래픽량에 비례해 추가로 돈을 낸다면(망 사용료),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Ⅲ-4 | 망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N: 1,000, 단위: %]



■ 망 사용료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결국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 62.2%, ‘인터넷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다’ 29.4%

- 망 사용료 부과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콘텐츠 사업자는 이용자가 접속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고,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사업자만 인터넷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62.2%였으나,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트래픽 비용을 더 받으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9.4%에 그쳤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4%임.
- 연령대별, 성별, 거주권역에 따라서도 ‘결국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인터넷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4 | 망 사용료의 이용자 영향

[단위: %]

구분	사례 수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트래픽 비용을 더 받으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는 이용자가 접속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고,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사업자만 인터넷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29.4	62.2	8.4	
연령대	19~29세	(228)	28.9	62.3	8.8
	30대	(218)	26.1	68.8	5.0
	40대	(269)	31.6	58.0	10.4
	50대	(285)	30.2	61.1	8.8
성별	남성	(514)	30.5	62.3	7.2
	여성	(486)	28.2	62.1	9.7
거주권역	서울	(193)	36.3	57.0	6.7
	경기/인천	(336)	28.6	61.0	10.4
	대전/세종/충청	(106)	23.6	71.7	4.7
	강원	(27)	25.9	70.4	3.7
	부산/울산/경남	(144)	25.0	66.7	8.3
	대구/경북	(90)	33.3	60.0	6.7
	광주/전라	(92)	28.3	62.0	9.8
	제주	(12)	33.3	41.7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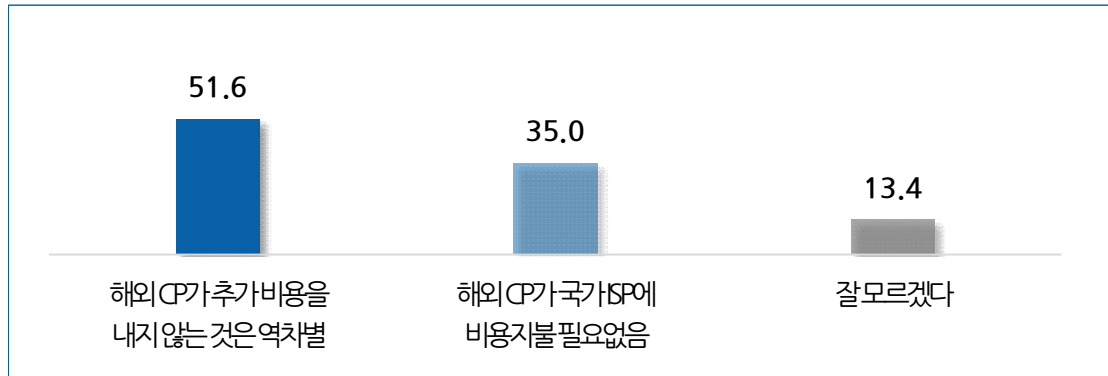
5.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Q

국내 콘텐츠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사이에 역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Ⅲ-5 |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N: 1,000, 단위: %]



-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 51.6%,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35.0%
 -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 인터넷 접속 비용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절반가량인 51.6%로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35.0%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3.4%임.
 -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19~29세와 30대 응답자에서는 ‘해외 CP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응답 비율(각 44.7%, 46.8%)과 ‘해외 CP가 국내 ISP에 비용지불 필요 없음’ 응답 비율(각 41.2%, 41.7%) 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40대와 50대에서는 ‘해외 CP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성별에 따라서 ‘해외 CP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음.
 - 거주권역에 따라서는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에서 ‘해외 CP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각 56.5%, 50.0%, 54.2%로 ‘해외 CP가 국내 ISP에 비용지불 필요 없음’이라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표 III-5 | 국내·해외 콘텐츠 사업자(CP) 간 역차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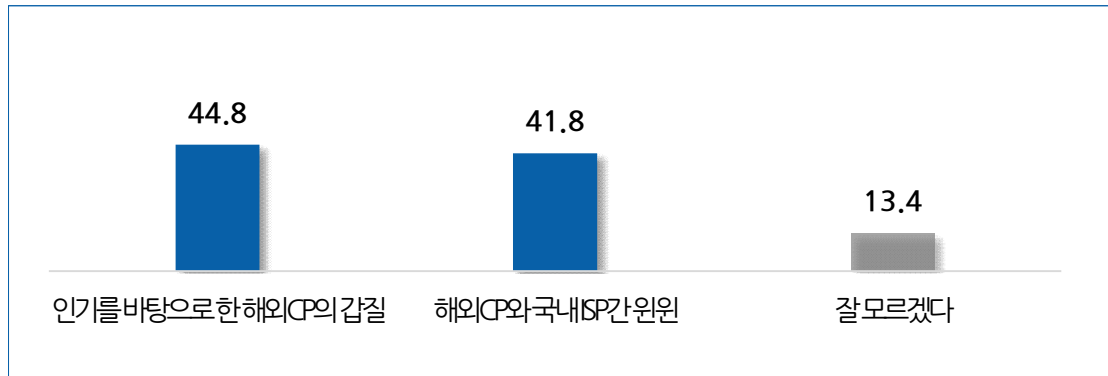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잘 모르겠다	
■ 전체 ■	(1000)	51.6	35.0	13.4	
연령대	19~29세	(228)	44.7	41.2	14.0
	30대	(218)	46.8	41.7	11.5
	40대	(269)	54.6	31.2	14.1
	50대	(285)	57.9	28.4	13.7
성별	남성	(514)	51.4	38.5	10.1
	여성	(486)	51.9	31.3	16.9
거주권역	서울	(193)	56.5	29.5	14.0
	경기/인천	(336)	50.0	36.6	13.4
	대전/세종/충청	(106)	50.0	39.6	10.4
	강원	(27)	55.6	25.9	18.5
	부산/울산/경남	(144)	54.2	33.3	12.5
	대구/경북	(90)	47.8	42.2	10.0
	광주/전라	(92)	47.8	33.7	18.5
	제주	(12)	50.0	33.3	16.7

6.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Q	해외 콘텐츠 사업자 중 일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과는 별도로 자사의 해외 케이블 및 캐시서버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지름길로 바로 접속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인터넷 접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림 III-6 |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N: 1,000, 단위: %]



■ 해외 콘텐츠 사업의 캐시서버 사용,

직접접속 대가마저 내지 않는 것은 ‘인기를 바탕으로 한 해외 콘텐츠 제공자의 갑질’ 44.8%, ‘해외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윈윈’ 41.8%

- 해외 콘텐츠 사업자 중 일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과는 별도로 자사의 해외 케이블 및 캐시서버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지름길로 바로 접속하는 것에 대해, ‘해외 콘텐츠 사업자(유튜브, 넷플릭스 등)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직접 접속하는 대가마저도 내지 않는 것은 인기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다’라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44.8%,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트래픽을 국내까지 끌어다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1.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13.4%에 달했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응답자에서 ‘인기를 바탕으로 한 해외 콘텐츠 제공자의 갑질’이라는 응답이 53.0%로 ‘해외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윈윈’이라는 응답의 비율 35.4%보다 높았으나, 40대 이하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성별에 따라서 여성에서는 ‘인기를 바탕으로 한 해외 콘텐츠 제공자의 갑질’이라는 응답이 45.9%로 ‘해외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윈윈’이라는 응답의 비율(37.4%)보다 높았으며, 남성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거주권역에 따라서 ‘인기를 바탕으로 한 해외 콘텐츠 제공자의 갑질’이라는 응답과 ‘해외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윈윈’이라는 응답 비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집단은 없었음.

표 III-6 |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캐시서버 이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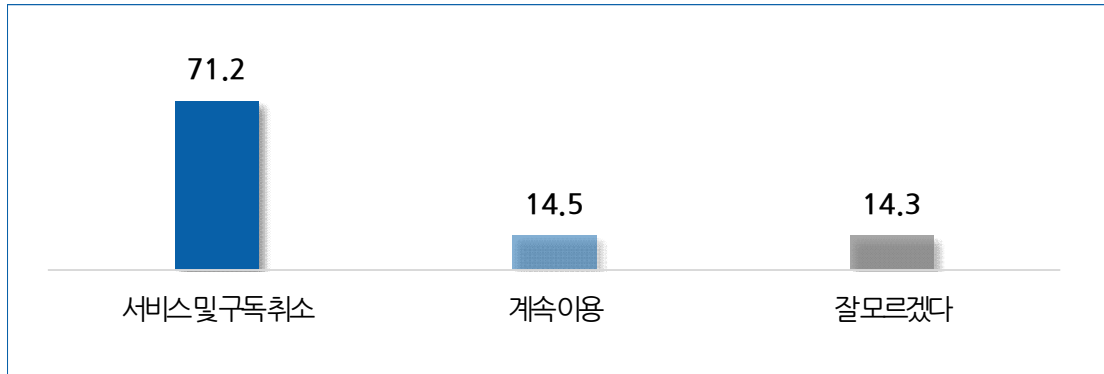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해외 콘텐츠 사업자(유튜브, 넷플릭스 등)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직접접속하는 대가마저도 내지 않는 것은 인기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트래픽을 국내까지 끌어다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다.	잘 모르겠다	
■ 전체 ■	(1000)	44.8	41.8	13.4	
연령대	19~29세	(228)	41.7	48.7	9.6
	30대	(218)	37.2	47.2	15.6
	40대	(269)	45.0	38.3	16.7
	50대	(285)	53.0	35.4	11.6
성별	남성	(514)	43.8	45.9	10.3
	여성	(486)	45.9	37.4	16.7
거주권역	서울	(193)	44.6	44.0	11.4
	경기/인천	(336)	45.5	42.0	12.5
	대전/세종/충청	(106)	50.0	39.6	10.4
	강원	(27)	33.3	44.4	22.2
	부산/울산/경남	(144)	48.6	36.8	14.6
	대구/경북	(90)	46.7	36.7	16.7
	광주/전라	(92)	33.7	48.9	17.4
	제주	(12)	33.3	58.3	8.3

7.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Q	만약, ‘망 사용료(데이터량에 비례한 추가 접속 요금)법’이 통과되어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접속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는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그림 Ⅲ-7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N: 1,000, 단위: %]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 71.2%, ‘계속 이용’ 14.5%

- ‘망 사용료법’이 통과되어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접속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인다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71.2%로 나타났고, ‘비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 14.5%에 불과하였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4.3%임.
- 연령대별, 성별, 거주권역에 따라서도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비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모두 높았음.

표III-7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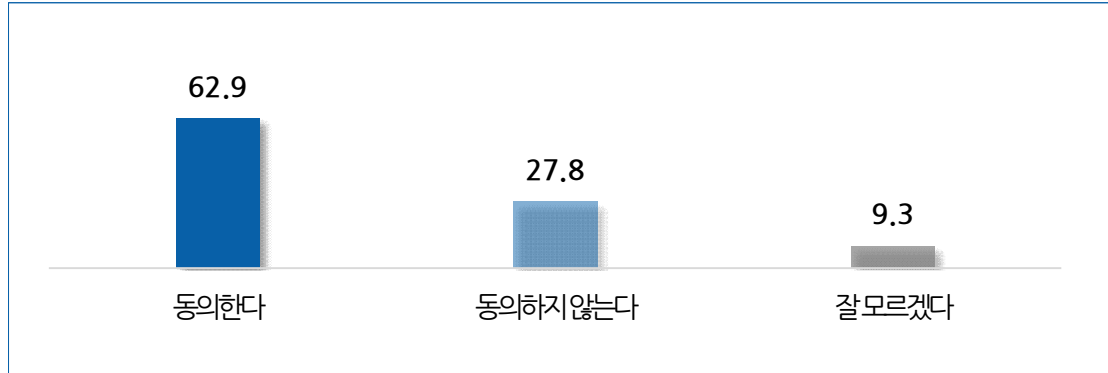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	비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하겠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71.2	14.5	14.3
연령대	19~29세	(228)	66.2	19.7	14.0
	30대	(218)	72.9	12.4	14.7
	40대	(269)	71.4	14.1	14.5
	50대	(285)	73.7	12.3	14.0
성별	남성	(514)	69.8	17.7	12.5
	여성	(486)	72.6	11.1	16.3
거주권역	서울	(193)	66.3	15.5	18.1
	경기/인천	(336)	71.1	13.7	15.2
	대전/세종/충청	(106)	67.9	17.0	15.1
	강원	(27)	85.2	11.1	3.7
	부산/울산/경남	(144)	75.7	13.2	11.1
	대구/경북	(90)	68.9	16.7	14.4
	광주/전라	(92)	75.0	13.0	12.0
	제주	(12)	83.3	16.7	0.0

8.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Q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

그림 Ⅲ-8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N: 1,000, 단위: %]



-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 국회 통과 시 ‘그 비용은 결국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 62.9%, ‘동의하지 않는다’ 27.8%
 -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 시 ‘그 비용은 결국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62.9%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27.8%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났음.
 -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9.3%임.
 - 연령대별, 성별, 거주권역에 따라서도 ‘동의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모두 높게 조사되었음.

표III-8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 소비자 전가

[단위: %]

구 분		사례 수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62.9	27.8	9.3
연령대	19~29세	(228)	63.2	27.6	9.2
	30대	(218)	68.8	22.0	9.2
	40대	(269)	55.0	33.5	11.5
	50대	(285)	65.6	27.0	7.4
성별	남성	(514)	63.6	28.4	8.0
	여성	(486)	62.1	27.2	10.7
거주권역	서울	(193)	60.6	26.4	13.0
	경기/인천	(336)	64.3	27.1	8.6
	대전/세종/충청	(106)	70.8	19.8	9.4
	강원	(27)	59.3	40.7	0.0
	부산/울산/경남	(144)	62.5	31.9	5.6
	대구/경북	(90)	64.4	27.8	7.8
	광주/전라	(92)	56.5	30.4	13.0
	제주	(12)	41.7	41.7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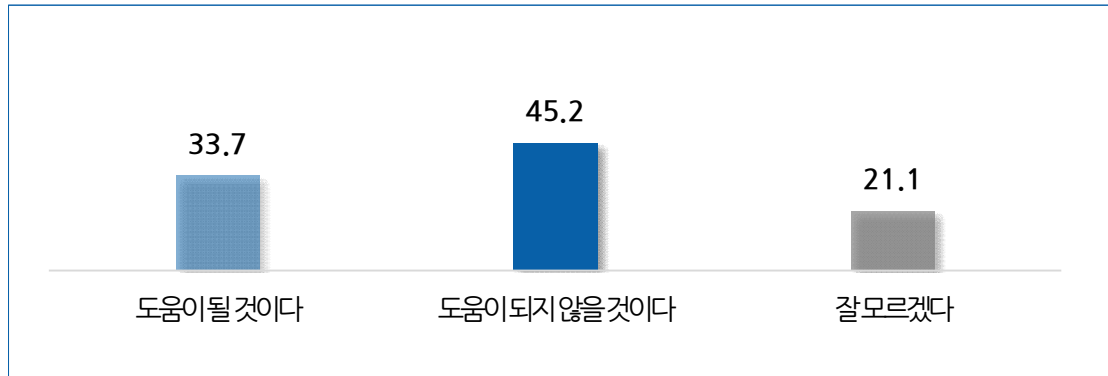
9.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Q

콘텐츠 사업자가 강제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및 콘텐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림 Ⅲ-9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N: 1,000, 단위: %]



■ 망 사용료법 통과되어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및 콘텐츠 품질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5.2%, '도움이 될 것이다' 33.7%

-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되어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및 콘텐츠 품질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5.2%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33.7%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19~29세와 30대 응답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각 49.6%, 52.8%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각 32.0%, 27.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40대와 50대 응답자에서는 두 응답의 비율이 뚜렷한 격차를 보이지 않았음.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4.4%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 28.2%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에 따라서는 '경기/인천' 응답자 사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44.9%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 32.7%보다 높았으며, 다른 지역 응답자 사이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III-9 |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인터넷/콘텐츠 품질향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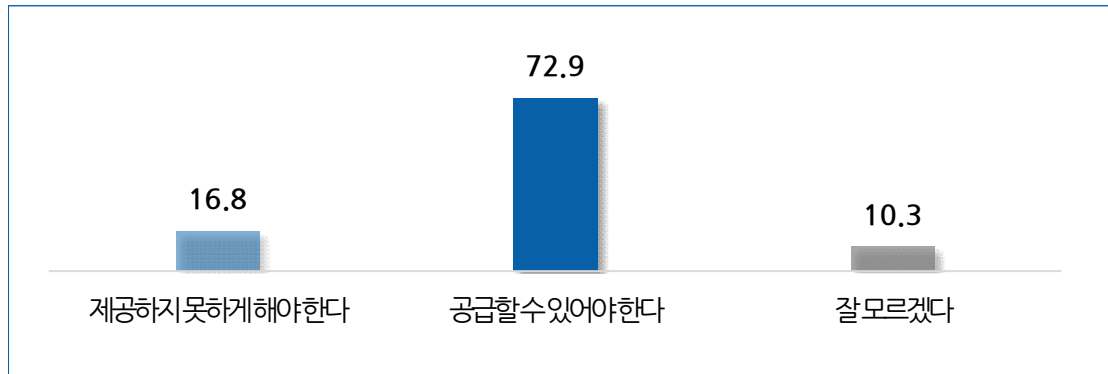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33.7	45.2	21.1
연령대	19~29세	(228)	32.0	49.6	18.4
	30대	(218)	27.5	52.8	19.7
	40대	(269)	37.9	40.1	21.9
	50대	(285)	35.8	40.7	23.5
성별	남성	(514)	38.9	45.9	15.2
	여성	(486)	28.2	44.4	27.4
거주권역	서울	(193)	39.4	38.9	21.8
	경기/인천	(336)	32.7	44.9	22.3
	대전/세종/충청	(106)	30.2	47.2	22.6
	강원	(27)	33.3	55.6	11.1
	부산/울산/경남	(144)	34.0	48.6	17.4
	대구/경북	(90)	28.9	46.7	24.4
	광주/전라	(92)	34.8	45.7	19.6
	제주	(12)	25.0	58.3	16.7

10. 공공인터넷 허용

Q	해외에서는 영리기업이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공공 인터넷(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그림 III-10 | 공공인터넷 허용

[N: 1,000, 단위: %]



-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공공인터넷,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72.9%,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16.8%
 -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공공 인터넷(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은 전기, 수도처럼 생활필수품이므로 국가와 공공기관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72.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터넷 사업자의 투자 동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대중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6.8%에 불과하였음.
 -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10.3%로 조사되었음.
 - 연령대별, 성별, 거주권역에 따라서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모두 높게 조사되었음.

표 III-10 공공인터넷 허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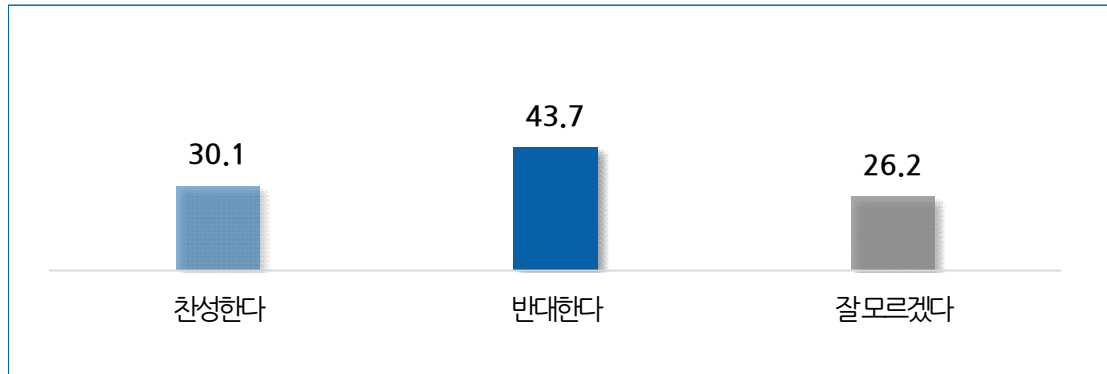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인터넷 사업자의 투자 동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대중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은 전기, 수도처럼 생활필수품이므로 국가와 공공기관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 전체 ■	(1000)	16.8	72.9	10.3	
연령대	19~29세	(228)	19.3	64.9	15.8
	30대	(218)	17.4	72.9	9.6
	40대	(269)	17.5	71.0	11.5
	50대	(285)	13.7	81.1	5.3
성별	남성	(514)	17.3	74.1	8.6
	여성	(486)	16.3	71.6	12.1
거주권역	서울	(193)	18.1	69.4	12.4
	경기/인천	(336)	18.8	69.6	11.6
	대전/세종/충청	(106)	22.6	69.8	7.5
	강원	(27)	7.4	85.2	7.4
	부산/울산/경남	(144)	18.8	72.9	8.3
	대구/경북	(90)	6.7	87.8	5.6
	광주/전라	(92)	10.9	76.1	13.0
	제주	(12)	8.3	83.3	8.3

11. 망 사용료법 찬반

Q 귀하의 '망 사용료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림 11-11 | 망 사용료법 찬반

[N: 1,000, 단위: %]



■ 망 사용료법, '반대한다' 43.7%, '찬성한다' 30.1%

- '망 사용료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3.7%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30.1%보다 높게 조사되었음. 한편,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4명 중 1명 가량인 26.2%로 나타났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만19~29세와 30대 응답자 가운데서 '망 사용료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만19~29세에서 50.4%, 30대 응답자 사이에서 48.6%로 '찬성한다'라는 응답의 비율(만19~29세 21.9%, 30대 25.7%)보다 높았음. 그러나 40대와 50대 응답자 사이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간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성별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찬성한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음. 한편,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에서 31.7%로 남성(21.0%)에서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거주권역 중에서는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에서 '반대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각 42.6%, 45.8%로 '찬성한다'라는 비율(각 28.9%, 28.5%)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III-11 | 망 사용료법 찬반

[단위: %]

구 분		사례 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 전 체 ■		(1000)	30.1	43.7	26.2
연령대	19~29세	(228)	21.9	50.4	27.6
	30대	(218)	25.7	48.6	25.7
	40대	(269)	33.1	36.8	30.1
	50대	(285)	37.2	41.1	21.8
성별	남성	(514)	34.8	44.2	21.0
	여성	(486)	25.1	43.2	31.7
거주권역	서울	(193)	33.2	40.9	25.9
	경기/인천	(336)	28.9	42.6	28.6
	대전/세종/충청	(106)	32.1	48.1	19.8
	강원	(27)	25.9	51.9	22.2
	부산/울산/경남	(144)	28.5	45.8	25.7
	대구/경북	(90)	31.1	44.4	24.4
	광주/전라	(92)	29.3	43.5	27.2
	제주	(12)	25.0	33.3	41.7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1. 조사개요
 2. 결과요약
 3. 조사결과
- 부록. 설문지

DATE ID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의뢰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망 사용료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망 사용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확인하고 보다 나은 인터넷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귀하의 모든 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 주 관 : 오픈넷

■ 시 행 : 리얼미터

SQ 인구통계정보

SQ1. [연령]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recode

- ① 만 18세 이하 *조사대상 아님*
 ② 19~29세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조사대상 아님*

SQ2. [성별]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I 망 사용료 관련

[※ 다음 설명문을 잘 읽으신 후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망 사용료 관련 】

인터넷은 전화, 우편과 달리 중앙 통제 없이 각자가 자유롭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업이든 가정이든 인터넷에 가입하여 접속속도에 비례하는 인터넷 요금만 내고 있으면 인터넷 사업자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인터넷 가입자와의 통신을 연결해줍니다.

이 덕분에 과거에 1명의 상대방과 국제전화 10분에도 몇만 원이 들었지만, 지금은 수백 명과 영상통화를 몇 시간을 해도 거의 무료가 되었고, 내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수억 명에게 전달되어도 통신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콘텐츠 사업자*들의 데이터량이 늘어나자 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 망의 유지비용을 이들에게 부담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접속비용 외의 별도의 추가 요금 즉 '망 사용료' 징수를 요구해왔습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최근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망 사용료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 법 반대자들은 데이터를 많이 보낸다고 해서 돈을 더 받으려는 것 자체가 망 중립성에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발신자중량제도 이미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접속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콘텐츠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국내 네이버, 다음, 해외 구글-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U+(구 LGU+)등이 있습니다.

[※ 지금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2가지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두 주장 중 어느 쪽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거나 공감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Q1. 우리가 넷플릭스나 카카오(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보려면 KT, SK, U+(인터넷 사업자)에 가입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비용을 냅니다. 접속속도가 높으니 인터넷 사업자는 일반 사용자보다 많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네이버 카카오 등은 매년 수백억 대). 귀하께서는 콘텐츠 사업자가 보낼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 인터넷 접속비용 외에 데이터량에 비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발신자총량제)?

- ① 그렇다. 인터넷도 택배나 수도요금처럼 많은 데이터를 쓴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 ②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나 인터넷 접속비용만 내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Q2.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적 원칙입니다. 귀하께서는 데이터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망 중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망 중립성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용하는 데이터량에 대해서 돈을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 ② 데이터를 보내는 자에게 그 양에 따라 돈을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차별이므로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
- ③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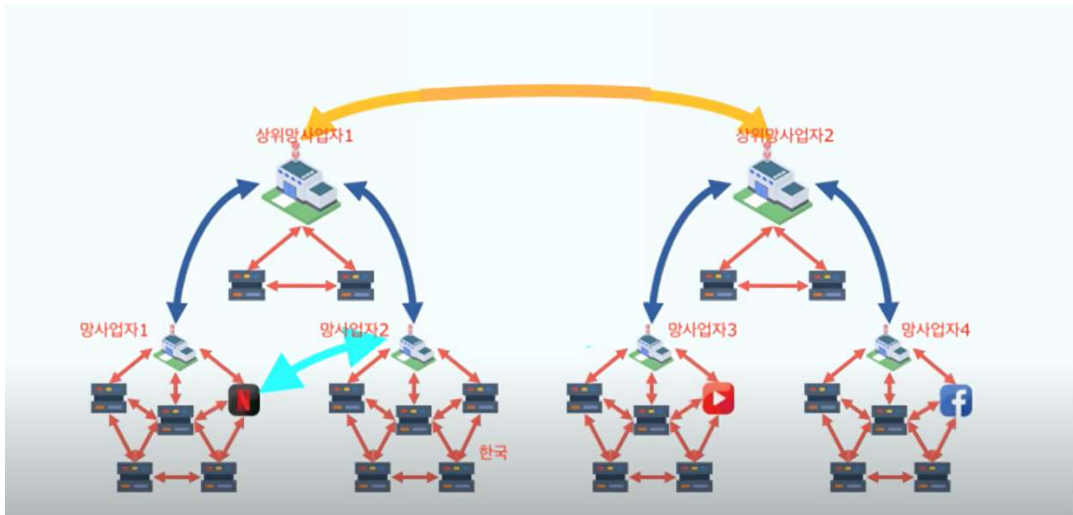
Q3. 이용자 중 많은 트래픽을 발신하는 콘텐츠제공자(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의 부담이 추가로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트래픽이 많으면 혼잡(인터넷 접속속도가 느려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연결 설비를 더 구축해야 하므로 인터넷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 ② 각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접속속도는 인터넷 사업자와의 계약에 정해져 있고 이용자들도 콘텐츠를 받아보려고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접속속도를 보장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 본연의 임무이다.
- ③ 잘 모르겠다.

Q4.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비용 외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트래픽량에 비례해 추가로 돈을 낸다면(망 사용료),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트래픽 비용을 더 받으면 일반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이다.
- ② 콘텐츠 사업자는 이용자가 접속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사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고, 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콘텐츠 사업자만 인터넷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이다.
- ③ 잘 모르겠다.

Q5. 국내 콘텐츠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등)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사이에 역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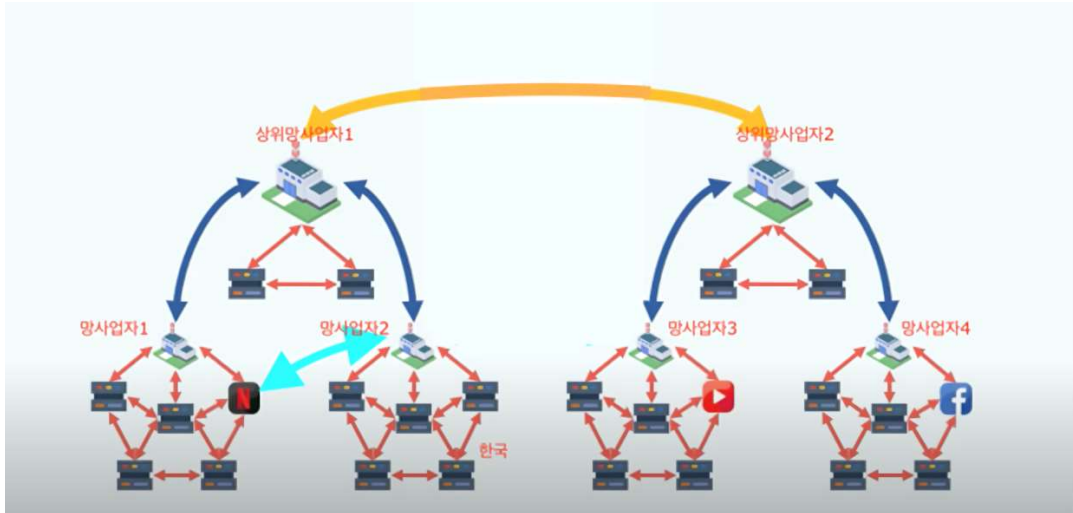


[그림자료]의 망사업자2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 망사업자 1,3,4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입니다

- ①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자들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내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
- ②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해외 콘텐츠 사업자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Q6. 해외 콘텐츠 사업자 중 일부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과는 별도로 자사의 해저 케이블 및 캐시서버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지름길로 바로 접속하기도 합니다. [그림자료의 하늘색 화살표] 이 같은 인터넷 접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해외 콘텐츠 사업자(유튜브, 넷플릭스 등)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직접접속하는 대가마저도 내지 않는 것은 인기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다.
- ②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트래픽을 국내까지 끌어다주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의 접속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다.
- ③ 잘 모르겠다.

[다음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Q7. 만약, ‘망 사용료(데이터량에 비례한 추가 접속 요금)법’이 통과되어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접속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해외 콘텐츠 사업자는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는 망 사용료 법안 통과 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
- ② 비용이 올라도 계속 이용하겠다.
- ③ 잘 모르겠다.

Q8.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① 동의한다.
- ② 동의하지 않는다.
- ③ 잘 모르겠다.

Q9. 콘텐츠 사업자가 강제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및 콘텐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③ 잘 모르겠다.

Q10. 해외에서는 영리기업이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공공 인터넷(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인터넷 사업자의 투자 동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대중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② 인터넷은 전기, 수도처럼 생활필수품이므로 국가와 공공기관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Q11. 귀하의 '망 사용료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사단법인 오픈넷이 의뢰한

「망 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의 결과물로 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일
(주)리얼미터

